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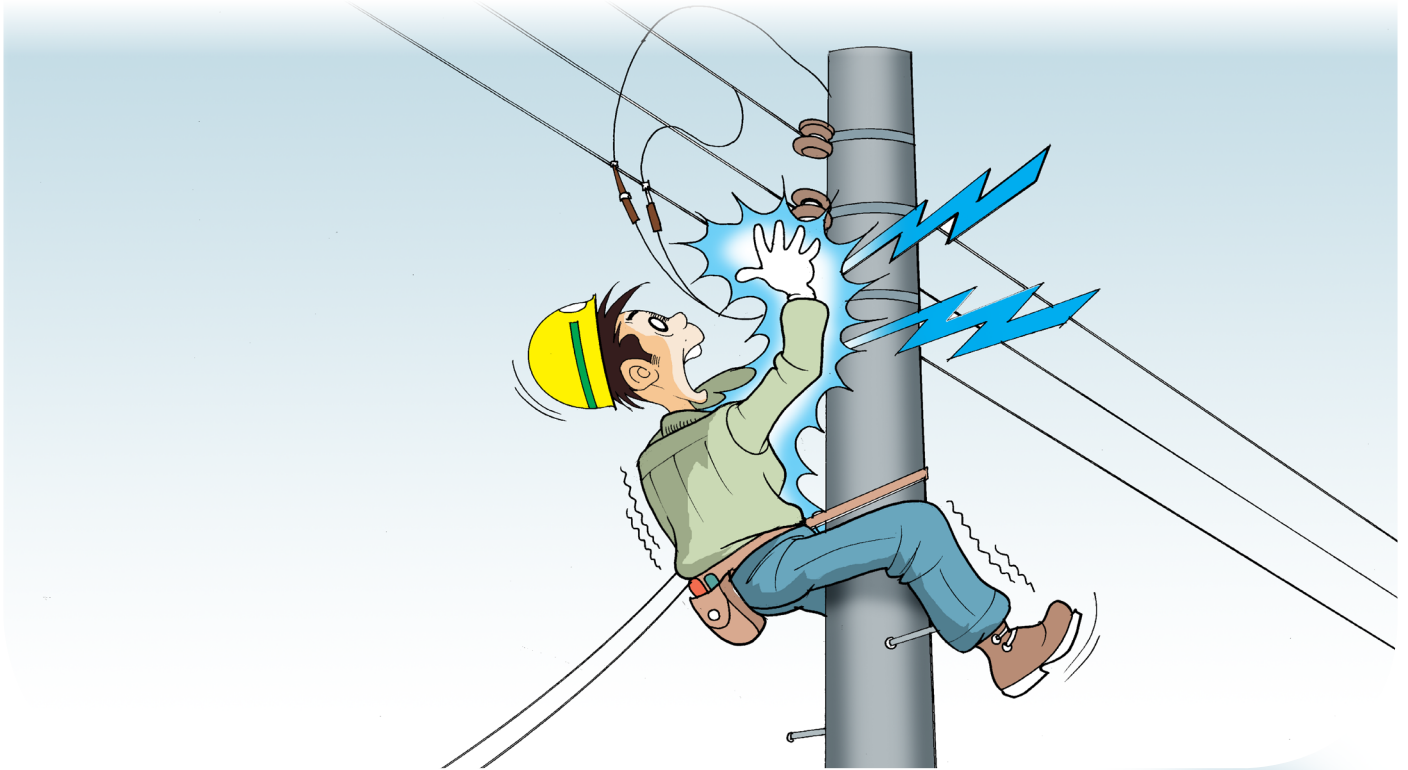
재해사례

(전원선)

저압활선작업 중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



저압전기(380V, 3상4선) 인입 공사현장에서 수용가 측 케이블과 한전 측 전선(활선)의 결선작업을 하던 중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전원선에 접촉되어 감전



! 재해발생 원인

- 충전전로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

※ 통전경로

T상(전원선) → 오른 손 → 몸통 → 오른쪽 겨드랑이 → 공통지선 → 밴드 → 조가선 → 대지

+ 안전작업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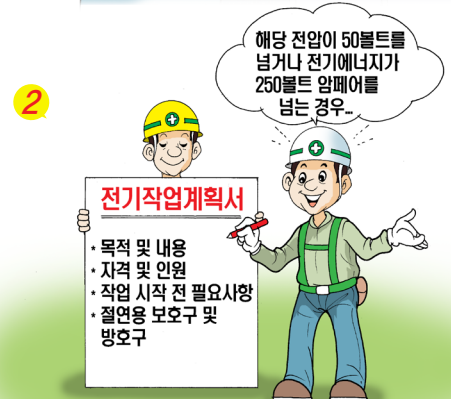
TIP

1 충전전로 등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

-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(절연장갑 등)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관리

2 전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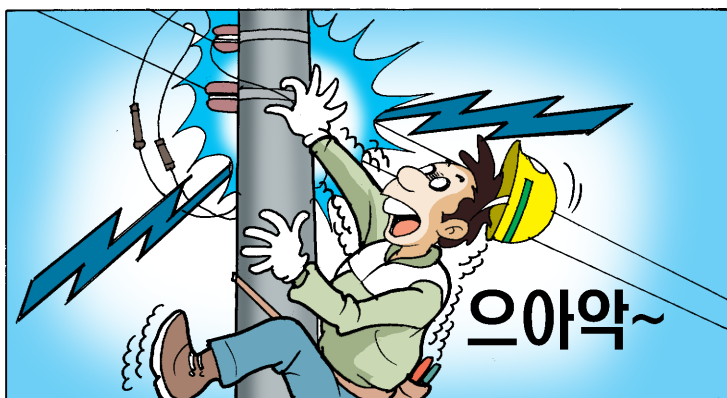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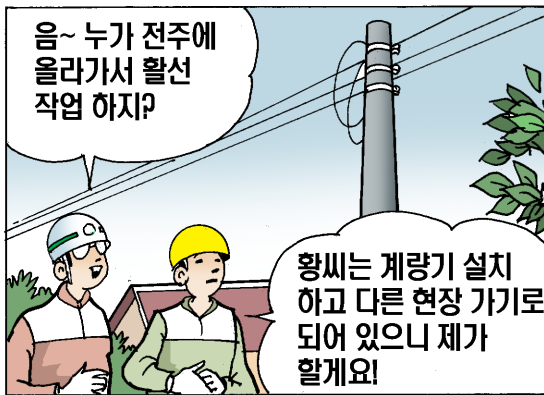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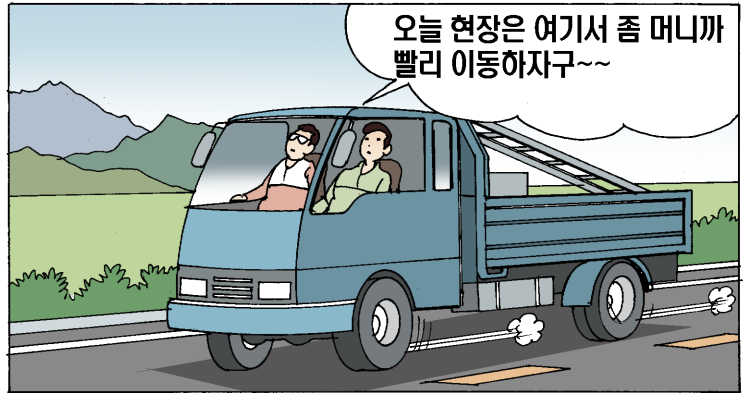
-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, 자격 및 인원,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 필요 사항,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,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·관리계획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준수





저압활선작업 중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전기 충전전로 작업시,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세요!

이번 사고는 저압전기
인입 공사현장에서
활선의 결선작업 중
전원선에 접촉되어
감전된 재해입니다.



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을
할 경우에 반드시 절연용
보호구를 착용하고,
또한 작업 전 점검, 보호구
착용 및 방호구 설치,
안전대책 등 전기작업
안전계획서를 작성하고
준수하여 작업하여야
합니다.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318조(전기작업자의 제한), 제321조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, 제323조(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)